

중구 아이존 무상임대 계약서

중립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내의 아래 표시 중구 아이존 시설(이하 “ 건물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무상임대에 관하여 중구청장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과 사단법인 인간발달복지연구소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건물 등의 표시

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립종합사회복지관 3층

규 모 : 중구 아이존 192.09㎡ (설계도면 별첨)

제1조 목 적

이 계약서는 건물의 무상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(주간재활시설) 『중구 아이존』 관리·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.

제2조 무상임대 계약

- 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“갑”에게 있으며 “갑”은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“을”에게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다.
- 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건물 등을 별첨 설계도면과 같이 무상임대하며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『중구아이존』 운영 공간에 대하여 무상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사용기간

“을”의 건물 등의 무상임대 사용기간은 **2016.01.01 ~ 2016.03.27**로 하며, 필요 시 “갑”과 “을”의 협의 하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 용도제한

“을”은 무상임대 받은 『중구 아이존』 공간을 정신보건법 제15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)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), 제10조(사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) 규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

- ① “을”은 무상임대 계약 완료일 이후부터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,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,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“갑”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“을”이 건물 등의 설치, 관리 및 보존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“을”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6조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

- ① “갑”은 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,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(이하 “관리비 등”이라 한다)을 “을”에게 고지한다. 이 경우 “을”은 매월 “갑”이 지정한 장소에 기한 내 납부한다. 다만,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납부할 수 있다.
- ② “을”이 관리비 등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기산 납부한다.

제7조 시설의 이용

“을”은 건물 내 전기, 수도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“갑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시설의 증설·원상 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“을”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.

제8조 행위금지 등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건물관리에 방해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건물 내 복리시설 및 조정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2. 건물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
 - 3. 건물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
 - 4. 기타 건물 내 관리질서를 해하는 행위

제9조 운영 등

- ① “을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후 『중구 아이존』을 개설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『중구 아이존』 운영 시 소속 회원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시설장으로 지정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 해제 또는 해지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사업목적 및 사업용도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“갑”과 “을” 서로가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“을”은 건물 등을 “갑”에게 명도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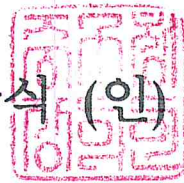
제11조 기타사항

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5. 12. 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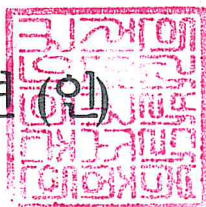
(이 계약서는 전문 및 본문 제1조에서 제 11조까지로 구성되었음)

“갑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(인)



“을” 사단법인 인간발달복지연구소 대표이사 노준식

대리인 김지연 (인)



<별첨> 설계도면

